

제정 2007. 4. 10. 개정 2008. 2. 11. 개정 2010. 1. 21. 개정 2012. 12. 26. 개정 2016. 1. 12. 가장 2016. 1. 12. 개정 2016. 12. 27. 개정 2018. 9. 20. 개정 2019. 9. 24.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19. 10. 11. 전부개정 2022. 8. 17.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22. 8. 22. 개청 2025. 2. 26.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2025. 3. 6.

제1장 총 칙

- 제 1 조(설립근거 및 명칭) 이 단체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되며, 그 명칭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라 하고, 영문으로는 GyeongSang Buk-Do Para Sports Association(약칭 'GBPSA')라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- 제2조(목적)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 경기단체를 지원·육성 하고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여 체육·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상황에 따라 경북도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- 1. 도내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, 결정
 - 2. 가맹단체와 시·군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
 - 3. 장애인생활체육 교실, 지역 스포츠클럽,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지원·대회 개최·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
 - 4. 시ㆍ도 및 해외도시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
 - 5. 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 및 주최, 주관, 후원, 지원 등
 - 6. 지역 선수·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
 - 7.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,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

- 8.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
- 9.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훈련 및 참가
- 10.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
- 11. 특수학교·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
- 12. 지역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· 운영
- 13.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행
- 14.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· 자문
- 15.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- 제5조(조직) ①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(이하 "가맹단체"라 한다.)는 본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, 정가맹단체, 준가맹단체, 인정 단체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에 가맹하고자 할 경우,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승인받아야 한다. 다만, 중앙 가맹단체가 없는 경우, 본회가 가맹승인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'정가맹단체'는 정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 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(이하 "총회"라 한다)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.
 - 2. '준가맹단체'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단체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 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.
 - 3. '인정단체'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 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
 - ④ 시·군 장애인체육회는 본회 지회로 하며, 본회의 정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 와 의무를 지닌다.
 - ⑤ 제2항에 따라 중앙 가맹단체가 없어 본회로부터 가맹승인을 받은 단체는 추후 중앙 가맹단체를 결성할 경우 본회 지회로 가맹된 것으로 본다.

제 6 조(가맹단체의 권리)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
- 1. 〈삭제 2025. 3. 6.〉
- 2. 〈삭제 2025. 3. 6.〉
- 3. 〈삭제 2025. 3. 6.〉

제 7 조(가맹단체의 의무) 회원은 본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
〈개정 2025. 3. 6.〉

- 1. 〈삭제 2025. 3. 6.〉
- 2. 〈삭제 2025. 3. 6.〉
- 3. 〈삭제 2025. 3. 6.〉

제 8 조(가맹) 본회 정가맹단체의 가맹은 대의원총회 의결로 확정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 제 9 조(탈퇴) ① 정가맹한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
- ② 본회에 정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탈퇴하게 하고,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한다.
- ③ 가맹단체의 가맹, 탈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관리단체의 지정)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중앙가 맹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
 - 2. 본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
 - 3. 60일 이상 가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
 - 4.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
 - 5.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
 - 6.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
 - 7. 가맹단체 평가에 따라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
 - 8. 경기력향상을 위해 본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.
 -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가맹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
 -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'관리단체운영규정'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.
 - 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'가맹단체운영규정' 제35조의2에 따라 본회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, 본회는 가맹단체에게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, 3, 6.〉

제3장 임 원

- 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- 1. 회 장 : 1인
 - 2.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
 - 3. 감 사 : 2인 이내
 - ② 제1항 제2호의 부회장 중 1인을 상임부회장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, 3, 6.〉
- 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3조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-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 한다.
 -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.
 -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. 다만, 정기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을 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 - ①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임원의 선출방법)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, 이사 중 부회장 위촉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. 다만, 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 - ② 회장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 중 1인은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 - ③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하고, 장애인과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%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 - ④ 회장,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,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,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-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,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- 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,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- 제14조(임원의 사임)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사 및 감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〈개정 2025. 3. 6.〉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.
 - 1. 제16조에 해당하는 때
 - 2.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
 - 3. 정가맹단체 및 시·군장애인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- 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,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.
 -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,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 -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-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 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 - 3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,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 - 4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
 - 5.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
- ⑥ 임원이 본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- 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- 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-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 된다.
- ⑧ 가맹단체 또는 장애인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 직무도 정지된다.
- 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 〈개정 2025, 3, 6.〉
 - 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 〈개정 2025. 3. 6.〉
 - 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 〈신설 2025. 3. 6.〉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 - 3의3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 〈신설 2025. 3. 6.〉

- 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임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- 제17조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장 대의원 총회

제18조(구성)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정 가맹단체의 장 각 1명
- 2.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장 각 1명
- ② 해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장이 총회 1일 전에 본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\langle 개정 2025. 3. 6. \rangle

제19조(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임(사무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해임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5. 3. 6.〉
- 2. 본회의 해산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정가맹단체의 가맹,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중요사항

제20조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3.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4.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- ③ 제2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, 대의원 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〈개정 2025, 3, 6.〉
- ④ 총회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.
- 제21조(의장)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 - ②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제22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의결할 수 있다.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**제24조(임원의 해임)**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

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 해야 한다.
-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,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5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6조(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결과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3.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
- 6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- 9. 시ㆍ군지회 설립에 관한 사항
- 10. 기타 중요사항
- ② 당연직 이사 중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,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제27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이사는 제26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
제28조(소집)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·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제29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5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, 출석 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- 제30조(긴급처리)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 6 장 각종위원회

- 제31조(위원회설치) 본회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,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생활체육위원회
 - 2. 전문체육위원회
 - 3. 상벌위원회
 - 4. 인사위원회
 - 5. 실업팀운영위원회
 - 6. 선수위원회
 - 7.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
- 제32조(규정) ①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 - ②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한다.

제 7장 가맹단체

- 제33조(조직 및 구성) ① 본회 회원인 가맹단체는 시군 가맹단체로 조직한다.
 - ② 가맹단체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 다만, 총회가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.
- 제34조(임원승인 및 취소)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중앙 가맹단체장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본회의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·철회할 수 있다.
- 제35조(규정)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8장 시·군지회

- 제36조(조직 및 구성) ①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과 시·군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하여 시·군에 지회를 두고, 시·군 지회는 시·군 가맹단체를 회원으로 둔다.
 - ② 시·군 지회장은 해당 시·군의 시장,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부회장중 1인은 시·군 교육장이 되고 기타는 회장이 지명한다.
 - ③ 시ㆍ군 지회 임원의 임기,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

〈신설 2025. 3. 6.〉

- ④ 시 \cdot 군 장애인체육회 조직,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 〈개정 $2025,\ 3,\ 6.〉$
- 제37조(임원의 승인 및 취소) ① 시·군 지회의 임원(시장·군수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)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- ② 본회는 시·군 지회 임원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
제 9 장 자산 및 회계

제38조(자산)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- 2. 기금 및 회비
- 3. 사업수입금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- 4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

- 5.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, 기부금 및 보조금
- 6. 기타 수입금
- **제39조(자산의 구분)**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.
 - 1. 부동산
 - 2. 기 금
 - 3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 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-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.
- 제40조(재산관리)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,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.
- 제41조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 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- 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 - 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- 제42조(사업계획, 예산, 결산의 승인)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- **제43조(기금 및 적립금)**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- 제44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5조(회계감사) 본회는 가맹단체 및 시·군 지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

제10장 사무처

제46조(사무처)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.

-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직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(산하지부 포함) 및 시·군 지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〈신설 2025, 3, 6.〉
- ⑤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〈신설 2025. 3. 6.〉
- ⑥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〈신설 2025. 3. 6.〉
- 제47조(사무처장의 직무) ① 사무처장은 상근하며,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 - ② 〈삭제 2025. 3. 6.〉
- 제48조(사무처 직제와 규정) 사무처의 기구, 조직,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 를 따로 정한다.
- 제49조(경영공시) 본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.
- **제50조(지원단)**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진흥의 다각적인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원단에는 단장을 비롯한 필요 임원을 두며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.
- 제51조(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)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단체를 포함 하여 가맹단체 및 시·군 지회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장 보 칙

- **제52조(표창 및 징계)**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.
 -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- 제53조(규약개정) ① 본회 규약의 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

- 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5. 3. 6.〉
- ② 규약의 변경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수정이 있을 때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54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·시행한다.
- **제55조(준용)**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② 본회는 대의원총회 구성 전까지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대행하며, 이사회가 행한 이전의 모든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이 규약 제12조 제4항과 관련하여, 제5기 임원 임기의 경우는 제4기 임원의 임기 만료 익일부터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- 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주요 용어인 '시·군지부'를 '시·군지회'로, '경기력향상 위원회'를 '전문체육위원회'로, '상벌·조정위원회'를 '상벌위원회'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해당 용어도 규약 승인을 받는 날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.
 - ② 관련 규정은 인사규정,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규정, 시·군지부 운영규정, 경기력향상 위원회 운영규정, 상벌·조정위원회 규정이다
 - ③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규약 제33조 제1호"를 "규약 제31조"로 한다.

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규약 제40조"를 "규약 제47조"로 한다.

부 칙(2025. 3. 6.)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는 이 규약 개정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